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10.(월) 11:00,  
(지면) 2024. 6. 11.(화) 조간

배포 2024. 6. 10.(월) 06:00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 수산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고,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선호 (044-200-5451)
	수산직불제팀	담당자	사무관	박순형 (044-200-6011)



##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과 유사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원'으로 설정

##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설정

### 참고 3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li> <li>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li> </ol> </li> <li>■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li> <li>■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li> <li>■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li> </ul>	
	허가어업	근해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li> </ul>
		연안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li> </ul>
		구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li> </ul>
	신고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li> <li>■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ul>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업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li> </ul>		
	양식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li> </ul>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li> </ul>		
「내수면어업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li> <li>■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ul>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li> <li>■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ul>		